

「여수시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2025년도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5톤 압롤트럭) 용역

과업지시서

2024. 12.



과업지시서

제1조 (목적 및 적용)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수행함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본 시방서는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톤당 위탁 수집·운반 용역 단가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개요)

- 가. 용역명 : 「여수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2025년도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5톤 암롤트럭) 용역
- 나. 처리대상 : 바닥재, 안정화처리물 및 하수처리오니
- 다. 용역내역 : 수집·운반
-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5. 12. 31.
- 마. 예정물량 : 7,800톤(12개월 추정치)
 - ※ 예정 물량은 우리 공단의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용역 기간은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될 수 있다.

바. 폐기물 배출 계획

구분	내용		
	바닥재(일 최대)	안정화처리물(일 최대)	하수처리오니(일 최대)
예정수량	5,200 톤	1,600 톤	1,000 톤
	일평균 : 19톤 (45톤)	일평균 : 6톤 (12톤)	일평균 : 3톤 (10톤)
운반횟수	3~4회 (6회)	1~2회 (3회)	1~2회 (3회)
배출시설	1개소(습식 재추출기)	1개소	2개소
용량	적재함 10m³ (5톤 암롤 차량용)		
규격	L3,600×W1,900×H1,500		

※ 배출시설의 상부 높이 제한으로 적재함(암롤)을 차량에 상차한 상태에서 진입불가

※ 적재함(암롤) 분리 가능한 차량만 상차 가능.

※ 적재함(암롤) 용량(10m³ / 5톤 암롤 차량용) 제한(배출시설 규격)

※ **운반횟수 (일평균) 4~6회, (일최대) 10회 이상(마지막차량 안정화물 15시 운반)**

제3조 (용어의 정의)

가. 과업지시서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처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요구사항, 지시사항, 과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발주기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환경자원사업소(시설 : 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다. 계약상대자

본 과업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발주기관” 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 을 말한다.

제4조 (참가자격)

본 과업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법에서 규정한 처리에 관련된 자격요건을 갖춘 적법한 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여수시 관내 소재한 사업자(지사투찰불허)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해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 허가를 득한 업체.(업종코드 : 1226)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세부내용(제2조(개요) 바. 폐기물 배출계획)의 **운반에 필요한 암롤박스, 차량의 용량 및 규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자격 미달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입증서류 미제출 및 미비 또는 허위 판명 시 추후에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주요업무)

가. 작업범위

“발주기관” 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계약상대자” 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처리기준 및 방법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그 처리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집·운반 절차

-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적재함(암롤)은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유출되거나 흘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 ② “계약상대자”는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하여야 한다.
- ③ 모든 폐기물운반은 주말에도 운반이 가능하여야 하며, 법정휴일일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시간을 계근시설 운영시간(08:00 ~ 16:00) 이내로 과업을 실시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매일 용역 완료 시 다음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하여야 한다.

라. 계량

- ① “발주기관”의 계량시설에서 공차 및 실중량 계근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계량시설의 고장 등 특별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 한다.
- ②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전자인계서”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제5항, 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

마.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① 폐기물 운반차량의 등록에 관한 사항
- ② 폐기물 배출 일정의 운휴 및 지연에 관한 사항
- ③ 폐기물 운반차량 이동경로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발주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제반법규 사항

제6조 (준수사항)

- 가. 폐기물 수집·운반은 「폐기물 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제반 법규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다. 폐기물 수집·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 및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규정에 위반되는 작업 시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 마.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과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바.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사.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과정의 계근, 운반, 처리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부적합 발견 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아. “계약상대자”가 위 과업지시서 사항들을 불이행 시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7조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법규에 따른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한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통상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은 여수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예상량으로 계약 물량이 증·감 될 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 등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기타

- 착수계 관련 서류

-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 ② 장비투입 계획서 및 운반차량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③ 안전관리 계획서(사고 대응 매뉴얼 포함)
- ④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한 서류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담당자 연락처 등